

항만국통제제도에 대한 인적요인 연구

이윤철⁺·김진권⁺⁺·전해동⁺⁺⁺

A Study on Human Factor for Port State Control System

Yun-cheol Lee⁺, Jin-Kwon Kim⁺⁺, Hae-Dong Jeon⁺⁺⁺

Abstract : The aim of Port State Control(PSC) system is recognized as a proficient mechanism in preventing coastal traffic accident and protecting marine environment. Recently, PSC system is focused on human factor of International Maritime Convention, especially ILO and STCW Convention by considering many accidents resulted from human factor. Therefore, we have to understand of Consolidated Maritime Labour Convention which describes employment conditions and social welfare policy, the rights about the lowest wages, the overdue wages, the unemployment protection, a disaster reward, etc and STCW Convention which describes standards of training, certification and watchkeeping for seafarers. The aim of this study is to recognize inspection points about human factor of these Conventions. .

Key words : ILO(국제노동기구), Consolidated Maritime Labour Convention(통합해사노동협약), STCW(선원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Port State Control(항만국통제), Human Factor(인적요인)

1. 서론

ILO 해사노동협약 또는 통합해사노동협약(ILO CMC : ILO Consolidated Maritime Convention)과 1978년 STCW협약은 SOLAS 및 MARPOL과 마찬가지로 항만국통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ILO 해사노동협약 및 STCW 협약은 선원의 건강과 생활환경 보호, 선원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라는 인적 요소를 규정하고 있어 물적 요소를 규정하는 타 협약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명확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이 점은 항만국통제시 다국적 선원에 의하여 운항되는 선박에 있어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에 최근 통합해사노동협약 및 STCW 협약과 관련하여 항만국통제에서 주요 사항으로 쟁점화 될 인적요인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한다.

2. 현행 해사노동협약

2.1 현행 해사노동협약의 구분

현행 해사노동협약은 선원의 고용 관련(9개 협약), 선원의 신분증명 및 자격증명 관련(4개 협약), 임금, 근로시간 및 정월 관련(6개 협약), 선원의 연차유급휴가 관련(4개 협약), 선원의 사회보장 관련(8개 협약), 선내 및 항구에서의 선원 복지 관련(4개 협약), 어선원 관련(5개 협약)으로 구분되어 있다.

2.2 항만국통제 관련 해사노동 협약

1976년 채택된 ‘상선의 최저기준에 관한 ILO 147호 협약은 항만국통제 대상협약으로 ILO 해사협약 중 가장 중요시되며, 기준미달선의 운항을 배제함으로써 항행의 효율성과 안전성의 향상, 해양환경의 보호, 선원의 건강과 안전 및 노동조건을 보호하고자 일정한 국제기준의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 ILO 147호 협약의 부속협약으로는 해원의 고용계약에 관한 제22호 협약, 해상에서 고용할 수 있는 어린이의 최저연령에 관한 제7호/58호/15호 협약, 해상에서 고용되는 어린이와 연소자의 의무적인 신체검사에 관한 제16호 협약, 선원의 건강검사에 관한 제73호

협약, 식량, 조달에 관한 제68호 협약, 해원의 질병, 상해, 사망에 관한 제55호 협약, 선원의 직업상 재해방지에 관한 제134호 협약, 선원설비에 관한 제92호/133호 협약, 선내 근로시간 및 정월에 관한 제57호/76호/93호/109호/180호 협약, 해원의 송환에 관한 제166 협약, 결사자유, 단결권에 관한 제87호/98호 협약, 근로자 대표에 관한 제135호 협약, 선원신분증명서에 관한 제108호 협약, 선원 건강보호, 의료에 관한 제164호 협약이 있다.

3. 통합해사노동협약

3.1 개요

ILO는 지난 2004년 1월 18일부터 23일까지 6일간 프랑스 낭트에서 제4차 노사정 고위작업반 회의를 개최하고, 1919년 ILO 설립 이래 채택된 낡고 오래된 상선선원 관련 선원건강검진에 관한 협약 등 39개 협약과 선원의 직업상 재해방지에 관한 권고 등 29개 권고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되 이를 단일 협약으로 통합하여 통합해사노동협약을 만들기로 했다.

그리고 통합 협약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해 5년의 유효기간으로 해사노동적합증서를 발급하되 이를 3년이 넘지 않는 간격으로 갱신검사를 실시하고 항만국통제시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국가에 대하여도 비준국가와 동일하게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새로 도입될 통합협약은 지난 2004년 9월 제네바에서 열린 해사예비기술총회를 거쳐 2006년 전반기에 국제노동총회 해사총회시 채택될 예정이다.

3.2 통합해사노동협약의 구성 및 내용

통합해사노동협약은 전문, 본문, 규정(Regulation), 코드 A, 코드 B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전문, 본문, 규정에서는 협약 기본권, 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강행 규정이다. 코드 A는 원칙 및 권리 요소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도 강행 규정이다. 한편 코드 B는 협약 세부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며 임의규정

+ 이윤철(한국해양대학교 해사수송과학부),E-mail:lyc@mail.hhu.ac.kr, Tel: 051)410-4279

++ 김진권, 한국해양대학교 해사수송과학부

+++ 전해동,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해상교통정보학과 해사법무정책전공

이다. 코드 B의 법적 지위는 단순한 권고 규정이 아니고 협약 이행시 상당한 고려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항만국통제에서 코드 B의 내용에 근거하여 통합해사협약의 이행여부를 규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통합해사노동협약은 제1장 선내근로를 위한 최저요건에서는 최저연령, 건강증명서, 훈련 및 자격증명, 직업소개소, 제2장 고용조건에서는 선원고용계약, 임금, 근로/휴식시간, 휴가권, 송환, 선박 멸실 또는 침몰시 선원보상, 승무원, 경력과 기술개발 및 선원고용 기회, 제3장 선원설비, 오락시설 및 식량과 조달에서는 선원설비 및 선내오락시설, 식량 및 조달, 제4장 건강보호, 의료관리, 복지 및 사회보장에서는 선내 및 육상 체류시 의료관리, 선박소유자의 재해보상책임, 건강안전 보호 및 사고방지, 항만 복지 시설 이용, 사회보장, 제5장 협약준수 및 법집행에서는 기국책임, 항만국책임, 선원공급국 책임을 그 내용으로 한다.

3.3 통합해사노동협약 관련 항만국통제 점검항목

기국은 협약을 준수하고 있다고 인정하면 해사노동적합증서(maritime labour certificate) 및 해사노동적합선언서(declaration of maritime labour compliance)를 발급해준다. 이 때 유효기간은 5년이며, 2개년 또는 3개년에 중간검사를 시행한다. 해사노동적합증서(MLC) 발급 전 기국이 검사, 승인하여야 할 선원의 작업 및 생활조건(15개 사항)으로는 최저연령, 건강진단서, 선원자격, 선원신분증명서, 선원고용계약, 허가 및 증명서를 받은 민간선원직업소개소의 사용, 근로 또는 휴식시간, 배수수준, 거주설비, 선내 오락시설, 식량 및 조달, 건강/안전/사고방지, 선내의료관리, 선내불만처리절차, 임금 지불이 있다. 항만국책임과 관련하여 선내 작업 및 생활 조건 관련 협약 준수여부 통제가 가능하나 PSC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선택사항이다. 해사노동적합증서(MLC) 및 해사노동적합선언서(DMLC)는 협약 준수의 추정적 근거이다. 단, 항만국은 위의 근로시간, 휴식시간, 승무원, 임금지불 등 15개 항목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 세부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그리고 아직은 미확정적이지만 선원의 안전, 건강 또는 보안 위협 시, 선원에 대한 심각한 물질적 곤란 야기 시, 최근 3회 정도의 중대사항 위반 시에는 출항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STCW 협약

4.1 항만국통제 관련 규정 개요

첫째, STCW 협약은 항만국통제관(PSCO)이 행사하는 통제는 통상적으로 다음으로 국한될 것을 규정한다(제 I /4조 제1항). 선원이 증명서, 유효한 면제증서(본문 제8조). 또는 외국 승무 자격증을 받기 위하여 신청을 하였다든 문서상의 증거[제 I /10조 제5항(3개월의 범위 내에서 인정)]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선원의 수와 증명서가 주관청의 안전배승요건에 적합한지 여부이다. 둘째, STCW 협약은 다음과 같이 해양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유효한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PSCO가 선원에 대하여 해기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선박이 충돌, 좌초 또는 좌주한 때, 선박이 국제협약에서 정한 불법물질을 배출한 때, 선박을 안전하지 못한 방법으로 운전하였거나

항로규칙을 지키지 아니한 때, 선박을 인명, 재산 또는 환경 등에 위험을 끼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종하였을 때이다. 셋째, PSCO가 임검결과 다음의 결함을 시정하지 못하여 인명, 재산 또는 환경에 위험을 끼친다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해당 선박의 출항을 정지시킬 수 있다. 유효한 증명서(해기자격증, 교육이수증, 면제증서, 주관청에 승무자격증을 신청 중임을 나타내는 증거나 서류 등 포함)를 소지하지 아니한 때, 주관청의 안전배승요건을 준수하지 못한 때, 주관청의 항해 또는 기관 당직기준에 따르지 않는 때, 무자격자에 의한 안전항해, 안전무선통신 또는 해양오염방지 장치의 작동, 항해개시시 첫 당직과 후속 교대 당직자가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당직에 임한 때이다.

4.2 STCW 협약 관련 항만국통제 점검항목

STCW 협약에 따른 점검항목으로는 첫째, 유효한 증명서이다. 해기사 자격증, 교육·훈련 이수증, 승무원경력증명 관련하여 기능과 등급의 표시 여부, 직무제한의 표시, 승무원경력 기록 관련등의 유효성을 점검한다. 둘째, 승무원증서이다. 승무원증서의 최신화 여부와 주관청이 발급한 승무원 증서에 부합되는 선원 정원을 확인한다. 셋째, 당직기준,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 등이다. 선주가 작성 선장에게 제시된 당직기준에 따라 당직체계가 마련 시행되어야 하고, 선내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의 기록유지를 요구하고 있다.

5. 결론

지금까지 통합해사노동협약 및 STCW 협약과 관련한 항만국통제에 있어서 쟁점화 될 주요사항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통합해사노동협약으로 인해 선원에 대한 법적 보호 및 복지가 증진되고 현행 협약의 최신화, 합리화가 실현되며, 항만국통제가 강화되고, 해사노동적합증서 발급으로 노동 규제가 심화될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 살펴보았던 몇가지 사항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항만국통제에 대한 대비능력이 제고되어야 하겠다. 아울러 PSCO는 해기자격제도가 나라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정부당국은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는 사항을 파악하여 법령의 정비를 해나가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강동수, “항만국통제론”, 효성출판사, 1998.
- [2] 강동수, “기준미달선에 대한 항만국통제제도의 발전과 그 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 1997.
- [3] 이윤철, “국제해사조약론”, 다솜출판사, 2004.
- [4] 이윤철, “항만국통제의 법적 근거와 국내시행상의 문제”, 국제법학회논문, 제 50권, 제 1호(통권 제 101호), 2005.
- [5] 전영우, “국제노동기구 해사노동협약의 통합동향”, 한국해법학회지 제 27권 제 1호, pp. 237-299, 2005.
- [6] 전영우, “STCW 협약 관련 항만국통제에 관한 실무적 고찰”, BON VOYAGE, 제 1월호(통권 5호), pp. 28-34, 2005.